

# 장성군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제2753호
----------	--------

- 제안자 : 장 성 군 수
- 제출일자 : 2026. 4. . .



## 1. 제정이유

- 장성군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산물안전분석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## 2. 주요내용

- 분석실 설치 및 기능(안 제3조)
- 분석실 운영 및 관리(안 제4조)
- 분석수수료 및 수수료 면제(안 제6조, 제7조)
- 분석결과 통지(안 제9조)

## 3. 관련법령

- 「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9조  
- 제9조제1항, 제2항(지방자치단체의 역할 - 안전성 검사 등)
-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60조(안전관리계획)  
- 제60조제2항, 제3항(농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및 잔류조사)
-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  
- 농약안전사용 기준 준수를 위한 시책의 적극적 추진

4. 예산조치 : 군비 748백만원(비용추계서 : 붙임)

5. 입법예고 : 2026. 02. 24 ~ 03. 16(20일간), 의견없음

## 6. 사전협의사항

- 부패영향평가 : 2026. 02. 27. 감사팀장 협의결과, 이견없음
- 규제심사 : 2026. 02. 23. 법무통계팀장 협의결과, 이견없음
- 성별영향평가 : 2026. 03. 12. 여성다문화팀장 협의결과, 이견없음

7. 조례안 : 붙임 1. 제정안

붙임 2. 비용추계서

## 장성군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장성군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장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산물안전분석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농산물안전분석실”(이하 “분석실”이라 한다)이란 토양 및 농산물에 잔류하거나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에 대하여 정성적·정량적 분석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.
2. “분석”이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.
3. “농업인 등”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(설치 및 기능) ① 장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석실을 설치할 수 있다.

1. 잔류농약 분석
2. 그 밖의 필요한 성분 분석

제4조(운영 및 관리) ① 군수는 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, 장비,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 분석실 운영 및 관리는 군수의 지도·감독을 받아 장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(이하 “소장”이라 한다)이 한다.

제5조(분석 의뢰) 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분석의뢰서와 분석 대상 시료를 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의뢰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로 분석의뢰서를 갈음할 수 있다.

② 분석의뢰서와 분석 대상 시료는 분석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,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장성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군 관계자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.

제6조(수수료) ① 제5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수수료 징수 절차는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을 따른다.

③ 소장은 분석이 시작되기 전에 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.

제7조(수수료의 면제)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
2. 군 소재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에 납품하는 농산물에 대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
3. 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영농 참고용으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
4. 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·농업법인이 인증 또는 농산물 판매 목적으로 검정증명용으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

5. 그 밖에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8조(분석의 거부)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.

1. 분석 결과를 농업 목적 외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피해 보상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2. 분석대상 시료가 오염, 변질 등으로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
3. 분석실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
4.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
5. 분석실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
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6조에 따라 분석 수수료를 납부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

제9조(분석 결과 통지) ① 소장은 분석이 끝난 경우, 별지 제2호서식의 분석결과 통지서를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.

② 분석결과 통지는 분석의뢰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 다만,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등 기간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은 그 기간을 분석의뢰자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.

제10조(이의신청 및 절차) ① 분석의뢰자는 제9조에 따른 분석결과 통지일 부터 30일 이내에 소장에게 분석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분석하여 그 결과를 분석의뢰자에게 통보해야 한다.

제11조(분석시료 및 자료의 관리) ① 분석을 완료한 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

이 관리한다. 다만, 이의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1.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는 분석 결과를 통지한 날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

2.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등의 이유로 부적합으로 판정된 시료는 분석결과를 통지한 날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

② 보관 장소 협소 등으로 일정 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 보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
③ 분석의뢰서 및 분석결과통지서 등 관련 자료는 3년간 보관한다.

제12조(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) ① 분석실에는 비상 응급약 등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처치에 필요한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.

② 분석실 근무자와 이용자는 안전사고의 예방과 사고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별표 2의 안전수칙과 별표 3의 분석실 사고 응급처리 요령 등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.

③ 분석실은 오염,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한다.

#### <부 칙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[별표 1]

## 분석 수수료 (제6조제1항 관련)

(단위: 원)

분석 항목 명	분석 기준	수수료
잔류농약분석	1점	174,000
유해중금속	1점 1성분	16,000
원수분석 ----- 수수료 기준 명기할 것	1점	136,000

※ 분석 수수료는 「농촌진흥청 시험·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」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에 준한다.

[별표 2]

## 분석실 안전수칙(제12조 관련)

### 1. 안전사고 예방

- 분석실에는 비상 응급약, 비상 샤워기, 소화기 등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처치에 필요한 물품을 비치해야 한다.
- 분석실에서는 반드시 실험복을 착용하여야 하며, 음식물 섭취를 금한다.

### 2. 분석 장비

-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 등 가스를 사용하는 장비는 정기적으로 가스 누출을 점검하고, 장비 사용 시 후드 시설 등을 이용하여 환기시킨 후 사용한다.
- 원심분리기는 원심분리관 헤드에 표시된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, 분리관 무게는 양측에 균형이 되도록 조절한다.
- 전열기구는 일과 후 전원이 연결된 채 방치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, 특히 고압 전열기구는 반드시 접지를 하여 사용한다.
- 모든 분석기기는 제작회사의 장비 작동법, 취급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한다.

### 3. 초자기구 및 시약

- 초자기구는 깨지기 쉬우므로 주의하여 취급하고, 눈높이(150cm)보다 낮은 곳에 보관한다.
- 유리기구를 다룰 때는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아야 하며, 세척할 때는 장갑을 착용하고 브러쉬를 사용하여 세척한다.
- 강산·강알카리 시약 등 유독성 시약을 사용할 때는 보안경, 마스크, 장갑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하고, 사용한 후 반드시 손을 씻는다.
- 휘발성 독극물이나 강산·강알카리는 흡후드 내에서 작업한다.

### 4. 화재예방

- 인화성 물질(아세톤 등)은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·관리한다.
- 가스 또는 알코올램프 등 화기는 점화 전 주위에 인화성 물질이 없는지 확인한다.
- 인화성 물질을 증류할 때는 반드시 수조 내에서 한다.
- 분석실은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.

### 5. 실험실 폐기물 처리

- 유해물질의 폐기물은 폐산, 폐알카리 등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별도의 폐기물 보관 장소에 보관 후 폐기물 수집 운반 전문업체를 통해 처리한다.
- 유해물질의 폐기물 취급 및 보관 장소에는 금연 및 화기 취급 엄금 표지를 한다.
- 악취,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폐액은 누설되지 않도록 적당한 처리방법을 강구하고 조기에 처리한다.

## 분석실 사고 응급조치 요령(제12조 관련)

### 1. 화 상

- 가벼운 화상을 입었을 경우 20~30분 동안 얼음물에 화상 부위를 담근다.
- 큰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몸을 눕혀 안정시키고 응급조치를 한 후 즉시 병원에 옮긴다.

### 2. 외 상

- 상처를 과산화수소로 소독한 후 상처 주위를 눌러 보아 통증이 있으면 살 속에 유리파편이 박혀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제거한다.
- 상처가 크면 지혈을 시키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한다.
- 눈에 파편이 들어갔을 경우 절대 눈을 비비지 말고 눈물로 흘러나오게 하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한다.

### 3. 약품이 피부에 묻었을 경우

- 진한 산·알칼리 등이 피부에 묻었을 경우는 즉시 물로 씻어낸 후 1~2%의 붕산수 또는 암모니아수로 씻고, 다시 물로 씻은 후 화상연고를 바른다.

### 4. 약품이 입에 들어갔을 경우

- 약품을 삼키지 않았을 경우 즉시 뱉어내고 물로 여러 번 씻어낸다.
- 약품을 삼켰을 경우 의식이 있을 때는 20% 식염수를 마시게 하여 삼킨 것을 토하게 한 후 병원으로 이송한다.
- 의식이 없을 경우는 즉시 병원에 옮긴다.

### 5. 약품이 눈에 들어갔을 경우

- 물로 충분히 씻은 후 즉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다.
- 산·알칼리 물질이 들어갔을 경우는 중화제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, 특히 암모니아수는 눈에 심한 피해를 주므로 주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.

### 6. 유독성 가스를 마셨을 경우

- 신선한 공기가 있는 장소로 옮기고, 필요에 따라 인공호흡 또는 산소호흡 등 응급 조치를 한 후 즉시 병원에 옮긴다.





# 비 용 추 계 서

## 1. 비용 발생 관련 조문

- 제4조제1항(운영 및 관리)에 따라 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, 장비, 인력의 확보와 유지 등에 따른 비용 발생

## 2. 비용추계의 전제

- 조례안은 분석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, 공공운영비, 재료비, 자산취득비 등을 반영하였음
- 재정소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본 추계에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을 추계기간으로 설정

## 3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- 이 조례 시행으로 2026년도 148백만원을 포함하여 향후 5년간 총 748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

## 4. 재원 조달 방안

- 재원은 군비로 충당

5. 작성자 :      농업기술과장              代 채 꽃 바 래 (채꽃바래인)

### 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계
세 입		-	-	-	-	-	-
세 출		148,400	150,000	150,000	150,000	150,000	748,400
사무관리비		10,400	12,000	12,000	12,000	12,000	58,400
공공운영비		65,000	65,000	65,000	65,000	65,000	325,000
재 료 비		73,000	73,000	73,000	73,000	73,000	365,000
재 원 조 달		148,400	150,000	150,000	150,000	150,000	748,400
자주재 원	소 계	148,400	150,000	150,000	150,000	150,000	748,400
	군 비 (일반회계)	148,400	150,000	150,000	150,000	150,000	748,400